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26일까지에서 2022년 7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3명(8급 13명)을 종전의 직급(9급 13명)으로 환원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정원 13명(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명, 8급 9명)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관리운영·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전환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두되”를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두며”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
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제4조의2제2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
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제8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독립유공자”를 각각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굴·등록”을 “발굴·기록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발굴·등록관리”를 “발굴·기록관리”로 한다.

제19조제6항제3호 중 “상병별”을 “질병·부상별”로 한다.

별표 3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4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34”로 한다.

별표 3의2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9”를 삭제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1”를 삭제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4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34”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

기 또는 전산서기 “16”을 “15”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8”을 “19”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을 “8”로 하고, 농림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36”을 “239”로 하고, 위생서기보 “16”을 “1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0”을 “134”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4”를 “221”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0”을 “222”로 하고, 위생서기보 “16”을 “1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13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7월 26일”을 “2022년 7월 26일”로 한다.

총리령 제137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2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162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10의2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거, 2024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명으로 본다.

[별표 13]

국가보훈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2022년 7월 26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보훈단체협력관) ① (생략)	제4조의2(보훈단체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u>보훈단체협력담당관을 두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u>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을 두며-----</u> ----- <u>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u>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u>

	<u>체협력관을 보좌한다.</u> 1. <u>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u> <u>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u> <u>항</u> 2. <u>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u> <u>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u> 3. <u>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u> <u>사업 승인제도의 운영</u> 4. <u>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u> <u>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u> <u>항</u> 5. <u>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u> <u>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u> <u>관리</u> 6. <u>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u> <u>사업 실태조사</u>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 ⑤ (생략) ⑥ 공훈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독립유공자</u> 발굴·포상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u>독립유공자</u> 포상을 위한 공 적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3. 삭 제 4. 국가유공자 <u>발굴·등록</u>에 관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u>독립유공자</u> 및 4·19혁명유 <u>공자</u> ----- 2. <u>독립유공자</u> 및 4·19혁명유 <u>공자</u> ----- 4. ----- <u>발굴·기록관리</u>-

한 정책의 수립·조정	-----
5. <u>발굴·등록관리</u> 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5. <u>발굴·기록관리</u>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u>상병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u> 에 관한 사항	3. ----- <u>질병·부상별</u> ----- -----
총리령 제137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총리령 제137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충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9조에 따른 충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3의2의 <u>행정서기·공업서기·</u> <u>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과</u> <u>별표 10의2 제1호의 행정서기·</u>	<삭 제>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2명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과 별표 10의2 제1호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2명으로 본다.

총리령 제162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명으로 본다.

총리령 제162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3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29</u>	+29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29</u>	<u><삭 제></u>	-29
·	·	·	
·	·	·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u>	<u>41</u>	<u><삭 제></u>	-4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1</u>	<u>42</u>	+41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u>			
<u>· 시설주사보 또는 전</u>			
<u>산주사보</u>	<u>33</u>	<u><삭 제></u>	-3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34</u>	+33
·	·	·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3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29</u>	+29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u> <u>·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29</u>	<u><삭 제></u>	-29
·	·	·	
·	·	·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u>	<u>41</u>	<u><삭 제></u>	-4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1</u>	<u>42</u>	+41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u> <u>· 시설주사보 또는 전</u> <u>산주사보</u>	<u>33</u>	<u><삭 제></u>	-3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34</u>	+33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 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6</u>	<u>15</u>	-1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u>18</u>	<u>19</u>	+1
·	·	·	
·	·	·	

[별표 4]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 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7</u>	· · <u>8</u>	+1
· · 농림운영서기보	· · <u>6</u>	· · <u>5</u>	-1
· ·	·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u>236</u>	<u>239</u>	+3
·	·	·	
·	·	·	
위생서기보	<u>16</u>	<u>1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6</u>	-2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 산주사보	<u>130</u>	<u>134</u>	+4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 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24</u>	<u>221</u>	-3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u>220</u>	<u>222</u>	+2
·	·	·	
·	·	·	
위생서기보	<u>16</u>	<u>1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6</u>	-2